

2026. 5. 15  
제 1736 호



**법원  
연보**

법원행정처

# 법원공보

2026년 5월 15일(금요일)

제1736호

## CONTENTS

●	<b>규칙</b>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75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753
●	<b>예규</b>	사법보좌관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756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에규 일부개정예규	772
		법원공무원 전문직위 운영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774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781
●	<b>신법령 목록</b>		788
●	<b>인사</b>		797
●	<b>공고</b>		832

## 규칙

###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255호 2026. 5. 6. 공포)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승용(전용)의 배정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운영 기준(제2조제2항 관련)

용도	규모	배정대상
승용 (전용)	대형 및 중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법관 또는 법원행정처장</li> <li>○ 사법연수원장 및 사법정책연구원장</li> <li>○ 각급 법원장(서울가정법원장 외 가정법원장 제외, 서울회생법원장 외 회생법원장 제외)</li> <li>○ 법원행정처 차장</li> <li>○ 법원도서관장</li> <li>○ 윤리감사관</li> <li>○ 대법원장 비서실장</li> <li>○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직위 보임자</li> <li>○ 차관급인 법원공무원</li> </ul>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운행 기준(제2조제2항 관련)				[별표]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운행 기준(제2조제2항 관련)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운행기준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운행기준
승용 (전용)	대형 및 중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법관 또는 법원행정처장</li> <li>○사법연수원장 및 사법정책연구원장</li> <li>○각급 법원장(서울가정법원장 외 가정법원장 제외)</li> </ul>	(생략)	승용 (전용)	대형 및 중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법관 또는 법원행정처장</li> <li>○사법연수원장 및 사법정책연구원장</li> <li>○각급 법원장(서울가정법원장 외 가정법원장 제외, <b>서울희생법원장 외 희생법원장 제외</b>)</li> </ul>	(현행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원행정처 차장</li> <li>○법원도서관장</li> <li>○윤리감사관</li> <li>○대법원장 비서실장</li> <li>○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직위 보임자</li> <li>○차관급인 법원공무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원행정처 차장</li> <li>○법원도서관장</li> <li>○윤리감사관</li> <li>○대법원장 비서실장</li> <li>○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직위 보임자</li> <li>○차관급인 법원공무원</li> </ul>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3256호 2026. 5. 6. 공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중 “제37조의2”를 각각 “제52조”로 한다.

제2조 중 “제3조제1항”을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 중 “제37조의2”를 “제4조제2항”으로, “진실규명된”을 “진실규명결정된”으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 )								
대상자	성명	(한자: )			생존여부	<input type="checkbox"/> 사망 <input type="checkbox"/> 생존 <input type="checkbox"/> 행방불명				
	본(한자)	( )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등록기준지									
	부모	성명	부:			모:				
		등록기준지	부:			모:				
기록사항	사망의 경우		일시		장소					
	신분에 관한 사항									
	정정할 사항									
<p>「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52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OO시(구)·읍·면장 귀하</p>										
구비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피해자임을 인정한 서면</li> <li>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면</li> <li>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에 관한 위 위원회의 결정서</li> <li>그 밖에 신분사항이나 가족관계등록부정정사항에 관한 소명자료</li> </ol>								수수료 없음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제52조----- ----- -----.</p>
<p>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은 법 제3조제1항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37조의2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결정한 내용으로 한다.</p>	<p>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 -----제4조제1항----- ----- -----제52조----- -----.</p>
<p>제3조(신청권자)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은 피해자(법 제37조의2에 따라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진실규명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할 수 있다.</p>	<p>제3조(신청권자) ----- ----- 제4조제2항----- -----진실규명결정된----- ----- -----.</p>

## 예규

### 사법보좌관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461호 2026. 4. 29. 결재)

사법보좌관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는 제1항의 대상자에 대하여 경력, 인품, 직무와 관련된 전문지식 및 직무수행 능력 등 후보자로서의 적격성을 심사한다.

제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후보자”를 “제1항의 대상자”로 한다.

④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 또는 선발위원회는 후보자로서의 적격성 심사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소속기관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추천사유 등을 문의할 수 있고, 구술심사, 개인역량조사 등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는 후보자로서의 적격성 평가를 사법보좌관선발위원회(이하 “선발위원회”라 한다)에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선발위원회 운영) ① 선발위원회는 제5조제3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서면평가, 면접평가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후보자로서의 적격여부를 평가한다.

② 선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 회의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선발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선발위원회에서의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3 및 제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서면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선발위원회의 서면평가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서면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서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③ 서면평가위원회는 선발위원회에서 평가를 요청한 대상자에 대한 서면평가결과를 선발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제5조의2제2항·제3항의 규정은 서면평가위원회에 준용한다.

제5조의4(면접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선발위원회의 면접평가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면접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면접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③ 면접평가위원회는 선발위원회에서 평가를 요청한 대상자에 대한 면접평가결과를 선발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제5조의2제2항·제3항의 규정은 면접평가위원회에 준용한다.

제5조의5 및 제5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5(특별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법원행정처장은 선발위원회의 적격성 평가와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에 대하여 특별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한다.

제5조의6(후보자의 승진임용) 후보자로 선발된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을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사법보좌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의한 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으로 임용하고, 규칙 제19조제2항에 의한 승진은 특별승진임용순위명부 순으로 임용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전보의 제한) ① 사법보좌관은 규칙 제33조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위로 전보하지 아니한다.

② 규칙 제33조제2항제7호에 따른 법원행정처장이 인사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사법보좌관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로의 전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선발위원회의 적격성 평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발된 사법보좌관이 최초 보직일을 기준으로 교육훈련기간을 포함하여 4년이 경과한 경우
3.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법보좌관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인사수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사법보좌관은 상위직급으로 승진한 경우에도 사법보좌관으로 계속 근무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정원관리 등 인사운용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계속 근무) ① 사법보좌관은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른 직위로 전보된 경우 그 직위의 근무가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 사법보좌관으로 근무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른 직위로의 전보를 위해 법원행정처장은 선발위원회의 적격성평가를 거치지 않고 선발된 사법보좌관을 대상으로 계속 근무 희망여부를 조사한다.

③ 사법보좌관이 제2항의 조사에 따라 계속 근무를 불희망할 경우 [별지3]의 계속근무 불희망원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제3항의 계속근무 불희망원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사법보좌관은 제6조제1항의 보직기간 중에도”를 “사법보좌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조 제1항 및 제3항의 보직기간 중 규칙 제33조 제2항 제1호·2호·3호·4호·6호”를 “규칙 제33조제2항 각 호”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제2항”을 “규칙 제33조제2항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6호”로, “서면으로 보고하여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월”을 “2월”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퇴직하거나 제6조 제1항 및 제3항의 보직기간이 만료된 경우,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근무를 계속할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여 소속기관 내에서 또는”을 “퇴직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3조 제2항 제1호·2호·3호·4호·6호”를 “제33조제2항 각 호”로 한다.

별지 1부터 별지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별지 4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별지 1]

사 법 보 좌 관 지 원 서

성 명	(한글)	생 년 월 일		. . . (만 세)	
	(한자)	직 급		협 직 일 차	. . .
근 무 부 서	법원 지원		과(등기소)		직 위
생 활 근 거 지					
연 락 처	사 무 실			휴대전화	
	☎( )-( )-( )			☎( )-( )-( )	
근 무 희 망 지 역	제1희망		제2희망	제3희망	
	제4희망		제5희망	어느 지역도 근무 가능함	
사법보좌관 업무 관련 근무이력 (7급 이상)	<input type="checkbox"/> 소송비용액확정 ( 년 개월)	<input type="checkbox"/> 경매 ( 년 개월)	<input type="checkbox"/> 독촉/전자독촉 ( 년 개월)	<input type="checkbox"/> 기타집행 ( 년 개월)	<input type="checkbox"/> 채권배당 ( 년 개월)
	<input type="checkbox"/> 집행문부여 ( 년 개월)	<input type="checkbox"/> 임차권등기명령 ( 년 개월)	<input type="checkbox"/> 기타(직접 기재) ( 년 개월)		
사무관 이상 직급의 근무이력	근무기간	소속법원	소속부서		
전 문 직 위 지정 이 력	지정발령일	해제발령일	업무분야		
본 안 재 판 참 여 경 력	근무기간	소속법원	소속부서		

교육이력 (5급)	교육기간	교육과목명	이수 결과
수상이력	상(賞名)	수여자(기관)	수여일자
논문 등 연구이력	저술 내용	발행처	일자
정보 수집·활용 동의	<p>본인은 사법보좌관선발 심사를 위한 목적으로 본인이 제출한 자료, 본인에 대한 각종 인사자료(업무유관자 평가, 업무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전산자료 등)를 수집·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날인)</p>		
<p>본인은 사법보좌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사법보좌관 업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약속하며 사법보좌관 지원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right;">법원장 귀하</p>			

## ※ 기재방법

- ① 생활근거지는 시(군), 동(읍)까지를 기재합니다.
- ② 근무희망지역은 각 지방법원단위를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어느 지역도 근무 가능함”란에 “○”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③ 사법보좌관 업무 관련 근무이력은 「사법보좌관규칙」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근무이력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 [예시] 기타 기재례 : 기타[상속한정승인(포기)신고] (6개월)
- ④ 전문직위 지정이력은 전문관 지정“발령”시점부터 기재합니다.
- ⑤ 본안재판 참여경력은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5조제1항에 의해 참여관 지정발령이 이루어진 참여관 근무경력을 기재합니다.
- ⑥ 교육이력은 5급에서 이수한 교육을 기재합니다(교육기간은 “나의인사”-“교육이력현황조회”에서 확인).
- ⑦ 수상 이력은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 「법원표창내규」, 「정부표창규정」, 「사법부포상계획」에 따라 수여 받은 모든 수상 이력을 기재합니다.  
※ [예시] 우수공무원 등 포상, 재판사무처리 우수공무원, 우수창안상(제안 우수공무원), 우수 경매참여관 포상, 우수 재판참여관 포상 등
- ⑧ 논문 등 연구이력은 책자 발간, 논문 작성 등과 관련한 구체적 저술 활동 내용을 간략히 기재합니다.  
※ [예시] 법원행정처 또는 각급법원에서의 업무편람·실무제요 등 발간등록번호가 있는 책자 발간, 학위 논문, 학술지 게재 연구 논문 등으로 한정

[별지 2]

## 사법보좌관 추천서

성명	생년월일	직급
평가요소	평가의견	
인품·청렴성·도덕성	공정성, 신중함 등 업무처리와 관련된 특성과 불공정한 업무처리 또는 부적절한 처신 여부, 책임감 등	
사법보좌관 직무 관련 전문지식 및 직무수행능력	사법보좌관 직무와 관련된 법적 지식과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등 여러 업무관련 쟁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 등	
기타	사법보좌관 직무 관련 경력 및 기타 긍정적 또는 부정적 요소로 볼 수 있는 사항, 사법보좌관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및 기대되는 역할 등	
추천의견 (☑표시)	<input type="checkbox"/> 적극추천	<input type="checkbox"/> 추천
	<input type="checkbox"/> 보통	

20 . . . . .

( )법원장 (인)

법원행정처장 귀하

[별지 3]

**계속근무 불희망원\***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사법보좌관 기수	기
주 소	직 급		
사법보좌관 최초보직일자			
<p>본인은 사법보좌관으로서의 계속근무를 희망하지 않습니다.</p> <p>20    년    월    일</p> <p>신 청 인 _____(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right;">○ ○ 법원장 귀하</p>			

\* 선발위원회의 적격성 평가를 거치지 않고 선발된 사법보좌관을 대상으로 하며, 선발위원회의 적격성 평가는 사법보좌관후보자 선발 시 서면평가, 면접평가를 진행한 경우를 의미함

※ 인력수급 및 불희망자 인원 등의 사정에 따라 다른 직위로의 전보가 제한될 수 있음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선발) ① (생 략)</p> <p>②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는 후보자의 경력, 인품, 업무수행능력 등 사법보좌관의 적격성을 심사한다.</p> <p>&lt;신 설&gt;</p> <p>③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제2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소속기관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추천사유 등을 문의할 수 있고, 다면평가방법 등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다.</p> <p>④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후보자를 현 직급임용일자, 승진후보자명부순위 등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심사순위를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p> <p>⑤ (생 략)</p> <p>⑥ (생 략)</p> <p>&lt;신 설&gt;</p>	<p>제5조(선발) ① (현행과 같음)</p> <p>②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는 제1항의 대상자에 대하여 경력, 인품, 직무와 관련된 전문지식 및 직무수행능력 등 후보자로서의 적격성을 심사한다.</p> <p>③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는 후보자로서의 적격성 평가를 사법보좌관후보자선발위원회(이하 “선발위원회”라 한다)에 요청할 수 있다.</p> <p>④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 또는 선발위원회는 후보자로서의 적격성 심사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소속기관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추천사유 등을 문의할 수 있고, 구술심사, 개인역량조사 등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다.</p> <p>⑤ ----- 제1항의 대상자----- ----- -----.</p> <p>⑥ (현행 제5항과 같음)</p> <p>⑦ (현행 제6항과 같음)</p> <p>제5조의2(선발위원회 운영) ① 선발위원회는 제5조제3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서면평가, 면접평가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후보자로서의 적격여부를 평가한다.</p> <p>② 선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 회의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p> <p>③ 선발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선발위원회에서의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제5조의3(서면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선발위원회의 서면평가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서면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 서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p> <p>③ 서면평가위원회는 선발위원회에서 평가를 요청한 대상자에 대한 서면평가결과를 선발위원회에 제출한다.</p> <p>④ 제5조의2제2항·제3항의 규정은 서면평가위원회에 준용한다.</p>
<p>&lt;신 설&gt;</p>	<p>제5조의4(면접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선발위원회의 면접평가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면접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 면접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p> <p>③ 면접평가위원회는 선발위원회에서 평가를 요청한 대상자에 대한 면접평가결과를 선발위원회에 제출한다.</p> <p>④ 제5조의2제2항·제3항의 규정은 면접평가위원회에 준용한다.</p>
<p>&lt;신 설&gt;</p>	<p>제5조의5(특별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법원행정처장은 선발위원회의 적격성 평가와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에 대하여 특별승진임용순위명부를 작성한다.</p>
<p>&lt;신 설&gt;</p>	<p>제5조의6(후보자의 승진임용) 후보자로 선발된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을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사법보좌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의한 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으로 임용하고, 규칙 제19조제2항에 의한 승진은 특별승진임용순위명부 순으로 임용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제6조(보직기간)</p> <p>① 사법보좌관의 보직기간은 4년으로 한다.</p> <p>② 제1항의 보직기간은 최초 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교육훈련기간을 산입한다.</p> <p>③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보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사법보좌관 후임자의 보직시기, 사법보좌관이 전보를 희망하는 직위 또는 기관의 결원발생시기, 법원·등기사무직렬 공무원의 정기 인사시기 등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까지 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④ 사법보좌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보직기간 동안에는 「사법보좌관규칙」(“규칙이라고 한다. 이하 같다) 제33조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위로 전보하지 아니한다.</p> <p>⑤ 사법보좌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보직기간 중 상위직급으로 승진한 경우에도 사법보좌관으로 계속 근무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정원관리 등 인사운용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6조(전보의 제한)</p> <p>① 사법보좌관은 규칙 제33조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위로 전보하지 아니한다.</p> <p>② 규칙 제33조제2항제7호에 따른 법원행정처장이 인사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법보좌관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로의 전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li> <li>2. 선발위원회의 적격성 평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발된 사법보좌관이 최초 보직일을 기준으로 교육훈련기간을 포함하여 4년이 경과한 경우</li> <li>3.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법보좌관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인사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li> </ol> <p>③ 사법보좌관은 상위직급으로 승진한 경우에도 사법보좌관으로 계속 근무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정원관리 등 인사운용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계속 근무) ① 사법보좌관은 제6조제1항의 보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사법보좌관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다.</p> <p>② 사법보좌관은 제6조제1항의 보직기간 만료 6월 전까지 [별지3]의 희망원(불희망원)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계속 근무기간은 1년을 단위로 하며, 이 경우에도 기간만료 6월 전까지 [별지3]의 희망원(불희망원)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계속 근무에 관한 소속기관장의 의견을 [별지4]의 의견서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7조(계속 근무) ① 사법보좌관은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른 직위로 전보된 경우 그 직위의 근무가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 사법보좌관으로 근무하여야 한다.</p> <p>②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른 직위로의 전보를 위해 법원행정처장은 선발위원회의 적격성평가를 거치지 않고 선발된 사법보좌관을 대상으로 계속 근무 희망여부를 조사한다.</p> <p>③ 사법보좌관이 제2항의 조사에 따라 계속 근무를 불희망할 경우 [별지 3]의 계속근무 불희망원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소속기관장은 제3항의 계속근무 불희망원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9조(전보) ① 사법보좌관은 제6조제1항의 보직기간 중에도 전·출입법원의 인력수급 등을 고려하여 소속기간의 장을 달리하는 기관에 사법보좌관으로 전보할 수 있다.</p> <p>② 사법보좌관이 제6조 제1항 및 제3항의 보직기간 중 규칙 제33조 제2항 제1호·2호·3호·4호·6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기관 내에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달리하는 기관에서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p> <p>③ 소속기관장은 소속 사법보좌관에게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고, 소속 4급 이하 사법보좌관을 소속기관 내에서 다른 직위로 전보할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p> <p>④ 법원·등기사무직렬 정기인사시기에 제1항의 전보를 실시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은 그 정기인사시기 1월 전에 법원행정처장에게 전보희망자를 보고하여야 한다.</p>	<p>제9조(전보) ① 사법보좌관은 ----- ----- ----- -----.</p> <p>② ----- 규칙 제33조제2항 각 호 ----- ----- ----- -----.</p> <p>③ ----- 규칙 제 33조제2항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6호 ----- ----- ----- 서면으 로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p> <p>④ ----- ----- 2월 ----- -----.</p>

현행

제12조(보직해제발령) ① 사법보좌관이 퇴직하거나 제6조 제1항 및 제3항의 보직기간이 만료된 경우,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근무를 계속할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여 소속기관 내에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달리하는 기관에서 다른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그 보직을 해제한 것으로 보고 별도의 발령을 하지 아니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소속 4급 이하 사법보좌관을 규칙 제33조 제2항 제1호·2호·3호·4호·6호의 사유로 전보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 보직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생략)

[별지 1]

사법보좌관지원서

성명	(한글)	생년월일		19 . . . (세)	
	(한자)	직급	현직급 임용일자	19 . . . .	
근무부서 생활근거지	법원 지원 과(등기소)		직위		
연락처	사무실		자택		휴대전화
	☎( )-( )-( )		☎( )-( )-( )		☎( )-( )-( )
근무희망 지역	제1희망	제2희망	제3희망		
	제4희망	제5희망	어느 지역도 근무 가능함		
근무경력	19 . . . ~ 19 . . .	법원 지원 과(등기소)	담당		
	19 . . . ~ 19 . . .	법원 지원 과(등기소)	담당		
	19 . . . ~ 19 . . .	법원 지원 과(등기소)	담당		
	19 . . . ~ 19 . . .	법원 지원 과(등기소)	담당		
	19 . . . ~ 19 . . .	법원 지원 과(등기소)	담당		
	19 . . . ~ 19 . . .	법원 지원 과(등기소)	담당		
	19 . . . ~ 19 . . .	법원 지원 과(등기소)	담당		
	19 . . . ~ 19 . . .	법원 지원 과(등기소)	담당		
	19 . . . ~ 19 . . .	법원 지원 과(등기소)	담당		
	19 . . . ~ 19 . . .	법원 지원 과(등기소)	담당		
	19 . . . ~ 19 . . .	법원 지원 과(등기소)	담당		
	19 . . . ~ 19 . . .	법원 지원 과(등기소)	담당		

본인은 사법보좌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사법보좌관 업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약속하며 사법보좌관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원 인 ⑤

법원장 귀하

개정안

제12조(보직해제발령) ① ----- 퇴직하거나 -----  
-----  
-----  
-----  
-----  
-----

② -----  
--- 제33조제2항 각 호-----  
-----  
-----

③ (현행과 같음)

[별지 1]

사법보좌관지원서

성명	(한글)	생년월일		. . . (만 세)	
	(한자)	직급	현직급 임용일자	. . . .	
근무부서 생활근거지	법원 지원 과(등기소)		직위		
연락처	사무실		휴대전화		
	☎( )-( )-( )		☎( )-( )-( )		
근무희망 지역	제1희망	제2희망	제3희망		
	제4희망	제5희망	어느 지역도 근무 가능함		
사법보좌관임용 관련 근무이력 (7급 이상)	<input type="checkbox"/> 소송비용액확정 (년 개월)		<input type="checkbox"/> 경매 (년 개월)		
	<input type="checkbox"/> 독촉/전자독촉 (년 개월)		<input type="checkbox"/> 기타집행 (년 개월)		
	<input type="checkbox"/> 집행문부여 (년 개월)		<input type="checkbox"/> 채권배당 (년 개월)		
	<input type="checkbox"/> 임차권등기명령 (년 개월)		<input type="checkbox"/> 기타(직접 기재) (년 개월)		
	근무기간		소속법원	소속부서	
사무관 이상 직급의 근무이력					
전문직위 지정이력	지정발령일		해제발령일		업무분야
본안재판 참여경력	근무기간		소속법원	소속부서	

현 행	개 정 안																		
<b>교 육 이 력</b> (5급)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5%;">교육기간</th> <th style="width: 45%;">교육과목명</th> <th style="width: 30%;">이수 결과</th> </tr> </thead> <tbody> <tr><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r> </tbody> </table>	교육기간	교육과목명	이수 결과															
교육기간	교육과목명	이수 결과																	
<b>수 상 이 력</b>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3%;">상(賞名)</th> <th style="width: 33%;">수여자(기관)</th> <th style="width: 34%;">수여일자</th> </tr> </thead> <tbody> <tr><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r> </tbody> </table>	상(賞名)	수여자(기관)	수여일자															
상(賞名)	수여자(기관)	수여일자																	
<b>논문 등 연구 이 력</b>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3%;">저술 내용</th> <th style="width: 33%;">발행처</th> <th style="width: 34%;">일자</th> </tr> </thead> <tbody> <tr><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r> </tbody> </table>	저술 내용	발행처	일자															
저술 내용	발행처	일자																	
<b>정보 수집·활용 동의</b>	<p>본인은 사법보좌관선발 심사를 위한 목적으로 본인이 제출한 자료, 본인에 대한 각종 인사자료(업무관자 평가, 업무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전산 자료 등)를 수집·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____ (서명 또는 날인)</p>																		
<p>본인은 사법보좌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사법보좌관 업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약속하며 사법보좌관 지원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____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right;">법원장 귀하</p>																			
<p><b>※ 기재방법</b></p> <p>① 생활근거지는 시(군), 동(읍)까지를 기재합니다.</p> <p>② 근무회망지역은 각 지방법원단위를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어느 지역도 근무 가능함"란에 "O"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p> <p>③ 사법보좌관 업무 관련 근무이력은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근무이력」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 [예시] 기타 기재례 : <input checked="" type="checkbox"/>기타(상속한경승인(포기)신고 (6개월)</p> <p>④ 전문직위 지정이력은 전문관 지정 "발령"시점부터 기재합니다.</p> <p>⑤ 본안제과 참여경력은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5조제1항에 의해 참여관 지정발령이 이루어진 참여관 근무경력을 기재합니다.</p> <p>⑥ 교육이력은 5급에서 이수한 교육을 기재합니다(교육기간은 "나의인사"-&gt;"교육이력현황조회"에서 확인).</p> <p>⑦ 수상 이력은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 「법원표창내규」, 「정부표창규정」, 「사법부포상계획」에 따라 수여 받은 모든 수상 이력을 기재합니다.                  ※ [예시] 우수공무원 등 포상, 재판사무처리 우수공무원, 우수첨안상(제안 우수공무원), 우수 경매참여관 포상, 우수 재판참여관 포상 등</p> <p>⑧ 논문 등 연구이력은 책자 발간, 논문 작성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저술 활동 내용을 간략히 기재합니다.                  ※ [예시] 법원행정처 또는 각급법원에서의 업무면담·심무제요 등 발간등록번호가 있는 책자 발간, 학위 논문, 학술지 게재 연구 논문 등으로 한정</p>																			

현 행					개 정 안					
[별지 2] 사 법 보 좌 관 추 천 서					[별지 2] 사 법 보 좌 관 추 천 서					
성 명		생년월일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직 급
평 가 요 소		평 가 내 용			평 가 요 소		평 가 의 견			
		상	중	하			공정성, 신중함 등 업무처리의 관련된 특성과 불공정한 업무처리 또는 부적절한 처신 여부, 책임감 등  사법보좌관 직무와 관련된 법적 지식과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등 여러 업무관련 쟁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 등  사법보좌관 직무 관련 경력 및 기타 긍정적 또는 부정적 요소로 볼 수 있는 사항, 사법보좌관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및 기대되는 역할 등			
인품·정열성·도덕성										
업무전문지식										
업무수행능력										
지위·통솔능력										
추천의견					추천 의 견 (☑표시)		<input type="checkbox"/> 적극추천 <input type="checkbox"/> 추천 <input type="checkbox"/> 보통			
20 . . . . (인) ( )법원장					20 . . . . (인) ( )법원장					
법원행정처장 귀하  ※ 평가요소의 빈칸에는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기재합니다.					법원행정처장 귀하					

현 행	개 정 안																																												
<p>[별지 3] <b>계속근무 희망원(불희망원)</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성명 (한자)</td> <td style="width: 25%;">소속</td> <td style="width: 20%;">사법보좌관 기수</td> <td style="width: 40%;">기</td> </tr> <tr> <td colspan="4">주소</td> </tr> <tr> <td colspan="2">사법보좌관 최초보직일자</td> <td colspan="2"></td> </tr> <tr> <td colspan="2">계속근무의사 유무</td> <td colspan="2"> <input type="checkbox"/> 희망    <input type="checkbox"/> 불희망                      ※ 해당 부분에 (✓) 표시                 </td> </tr> </table> <p>위와 같이 사법보좌관으로서의 계속근무를 희망합니다(희망하지 않습니다). ※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황선으로 표시(예시 : 불희망원, 희망하지 않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0 . . . . .</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인)</p> <p><input type="checkbox"/> 법원장 귀하</p>	성명 (한자)	소속	사법보좌관 기수	기	주소				사법보좌관 최초보직일자				계속근무의사 유무		<input type="checkbox"/> 희망 <input type="checkbox"/> 불희망 ※ 해당 부분에 (✓) 표시		<p>[별지 3] <b>계속근무 불희망원*</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성명 (한자)</td> <td style="width: 25%;">생년월일</td> <td style="width: 20%;">사법보좌관 기수</td> <td style="width: 40%;">기</td> </tr> <tr> <td colspan="2">주소</td> <td colspan="2">직급</td> </tr> <tr> <td colspan="2">사법보좌관 최초보직일자</td> <td colspan="2"></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본인은 사법보좌관으로서의 계속근무를 희망하지 않습니다.</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날인)</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right;"><input type="checkbox"/> 법원장 귀하</td> </tr> </table> <p><small>* 선발위원회의 적격성 평가를 거치지 않고 선발된 사법보좌관을 대상으로 하며, 선발위원회의 적격성 평가는 사법보좌관후보자 선발 시 서면평가, 면접평가를 진행한 경우를 의미함</small></p> <p><small>※ 인력수급 및 불희망자 인원 등의 사정에 따라 다른 직위로의 전보가 제한될 수 있음</small></p>	성명 (한자)	생년월일	사법보좌관 기수	기	주소		직급		사법보좌관 최초보직일자				본인은 사법보좌관으로서의 계속근무를 희망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날인)				<input type="checkbox"/> 법원장 귀하			
성명 (한자)	소속	사법보좌관 기수	기																																										
주소																																													
사법보좌관 최초보직일자																																													
계속근무의사 유무		<input type="checkbox"/> 희망 <input type="checkbox"/> 불희망 ※ 해당 부분에 (✓) 표시																																											
성명 (한자)	생년월일	사법보좌관 기수	기																																										
주소		직급																																											
사법보좌관 최초보직일자																																													
본인은 사법보좌관으로서의 계속근무를 희망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날인)																																													
<input type="checkbox"/> 법원장 귀하																																													
<p>[별지 4] <b>사법보좌관 계속근무에 관한 의견서</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성명</td> <td style="width: 25%;">생년월일</td> <td style="width: 20%;">직급</td> <td style="width: 40%;">기</td> </tr> <tr> <td colspan="2" rowspan="2">평가요소</td> <td colspan="2">평가내용</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중    하</td> </tr> <tr> <td colspan="2">인품·정열성·도덕성</td> <td></td> <td></td> </tr> <tr> <td colspan="2">업무전문지식</td> <td></td> <td></td> </tr> <tr> <td colspan="2">업무수행능력</td> <td></td> <td></td> </tr> <tr> <td colspan="2">지위·통솔능력</td> <td></td> <td></td> </tr> <tr> <td colspan="2">계속근무에 관한 의견</td> <td></td> <td></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200 . . . . .</p> <p style="text-align: right;"><input type="checkbox"/> 법원장 (인)</p> <p><b>법원행정처장 귀하</b></p> <p><small>※ 평가요소의 빈칸에는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기재합니다.</small></p>	성명	생년월일	직급	기	평가요소		평가내용		상	중    하	인품·정열성·도덕성				업무전문지식				업무수행능력				지위·통솔능력				계속근무에 관한 의견				<p>〈삭 제〉</p>														
성명	생년월일	직급	기																																										
평가요소		평가내용																																											
		상	중    하																																										
인품·정열성·도덕성																																													
업무전문지식																																													
업무수행능력																																													
지위·통솔능력																																													
계속근무에 관한 의견																																													

##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462호 2026. 4. 29. 결재)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사법보좌관규칙」 제19조”를 “「사법보좌관규칙」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승진심사대상 범위)</p> <p>① · ② (생 략)</p> <p>③ 「사법보좌관규칙」 제19조에 의하여 법원서기관으로 승진임용 시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법보좌관 후보자로 선발된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이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의 4배수에 50인을 합한 범위에 있어야 한다.</p> <p>④ (생 략)</p>	<p>제16조(승진심사대상 범위)</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사법보좌관규칙」 제19조제1항 ----- ----- ----- ----- ----- ----- -----.</p> <p>④ (현행과 같음)</p>

## 법원공무원 전문직위 운영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463호 2026. 4. 30. 결재)

법원공무원 전문직위 운영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별표 1]

**전문직위별 직무수행요건(제4조 관련)**

## ■ 업무수행경력은 주사보 이상의 경력

업무분야	관할 법원 (부서명)	직급	직무수행요건
공탁업무담당	각급 법원	5	- 공탁(민사과, 형사과, 신청과 등 유관부서 경력 포함)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공탁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공탁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공탁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가족관계등록감독사무	각급 법원	5~7	- 가족관계등록사무 감독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가족관계등록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가족관계등록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가족관계등록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후견감독사무	각급 법원	5~7	- 후견감독사무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후견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성년후견과정, 후견감독담당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후견감독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양형조사담당	각급 법원	5~7	- 양형조사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형사재판, 양형 관련 제도 및 양형조사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형사재판, 양형 관련 제도 및 양형조사제도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예산회계담당	각급 법원	6~7	- 예산·회계 관련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예산·회계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예산·회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소송수행전담	각 고등법원	5	- 국가소송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국가소송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국가소송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경매재판 참여사무	각급 법원	5~7	- 경매재판 참여사무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경매재판 참여사무 업무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경매재판 참여사무 업무에 대한 이해와 운영능력이 있는 사람

업무분야	관할 법원 (부서명)	직급	직무수행요건
채권배당 참여사무	각급 법원	5~7	- 채권배당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채권배당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채권배당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대법원 재판참여업무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	6~7	- 재판참여 관련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재판참여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상고심 재판지원	법원행정처 *총무담당관실	5~7	- 재판지원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재판절차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증인지원담당	각급 법원	5~7	- 증인지원 업무수행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증인지원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형사재판절차 및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범죄처벌법」 등 증인지원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증인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경력·인품·적성을 갖추고, 증인지원제도에 대한 이해와 능력이 있는 사람
개인회생업무담당	각급 법원	5	- 도산 관련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을 보유하고, 회생위원 준비과정을 수료 또는 회생위원 전문역량인증과정을 수료 또는 인증 받은 사람
관리담당	서울고등법원	5	- 시설·후생 관련 업무수행능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시설·후생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소송비용 (장기미제전담)	각급 법원	5~7	- 소송비용 업무수행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소송비용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소송비용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법원청사 조성·운영 및 시설관리	각급 법원	5~7	- 법원청사 신·증축, 청사운영, 시설관리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법원청사 신·증축, 청사운영, 시설관리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법원청사 신·증축, 청사운영, 시설관리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업무분야		관할 법원 (부서명)	직급	직무수행요건
사 법 행 정 담 당	재정운영	법원행정처 *예산담당관실 *시설담당관실 *정보화심의관실 *사법등기심의관실 *가족관계등록과 *재무담당관실	4~7	- 예산편성·배정·집행·결산·국유재산관리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예산, 계약, 국유재산관리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예산제도, 국가계약제도, 국유재산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조직운영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실	5~7	- 조직·정원관리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보수·수당, 직무분석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조직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조직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국회협력	법원행정처 *기획담당관실	5~7	- 국회업무에 대한 이해와 대응 능력이 있는 사람 - 국회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법령안 검토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1의관실 *민사지원제2의관실 *형사지원심의관실 *특별지원심의관실 *사법정책심의관실	5	- 민사, 형사, 상사, 가사, 도산, 특허, 행정, 사법정책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위 각 업무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위 각 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등기 · 등록 제도 개선 및 질의 · 회신	부동산등기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	5~7
공탁		법원행정처 *공탁법인심의담당실	5	- 공탁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공탁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공탁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법인 등기		법원행정처 *공탁법인심의담당실	5	- 법인등기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법인등기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법인등기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업무분야		관할 법원 (부서명)	직급	직무수행요건
	가족 관계 등록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과	4~7	- 가족관계등록사무 감독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가족관계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가족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법원행정처 *재외국민가족관계 등록사무소	5~7	- 국제가족관계등록사무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국제가족관계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국제가족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감사	대법원 *윤리감사제2의관실	5~7	- 감사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감사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감사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인사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운영심의관실 *인사협력심의관실	5	- 인사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인사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인사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재판 지원 및 제도 개선	조정, 전문 심리위원, 감정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1의관실	5	- 민사조정, 전문심리, 감정,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민사조정, 전문심리, 감정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민사조정, 전문심리, 감정 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민사집행, 소송비용, 소송구조, 사법보좌관 및 참여관 역할 강화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2의관실	5~7	- 민사집행, 소송비용, 소송구조, 사법보좌관 업무지원, 참여관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민사집행, 소송비용, 소송구조, 사법보좌관, 참여관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민사집행, 소송비용, 소송구조, 사법보좌관, 참여관 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증인지원관, 법원조사관, 인신 보호, 국민참여 재판, 국선 변호	법원행정처 *형사지원심의관실	5	- 증인지원관, 법원조사관, 인신보호, 국민참여재판, 국선변호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증인지원, 법원조사관, 인신보호, 국민참여재판, 국선변호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증인지원관, 법원조사관, 인신보호, 국민참여재판, 국선변호 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업무분야		관할 법원 (부서명)	직급	직무수행요건
도산, 가사 · 소년		법원행정처 *특별지원심의관실	5	- 도산, 가사조사, 소년조사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도산, 가사조사, 소년조사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도산, 가사조사, 소년조사 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단체 및 공무직 총괄업무		법원행정처 *인사협력심의관실	5	- 인사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노사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언론 협력·지원		법원행정처 *공보관실	5	- 언론 협력·지원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언론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국제업무담당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 사법연수원	5~7	- 외국 사법기관과의 국제업무를 이해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 - 외교부, 재외공관 등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연수관·교육관 업무총괄		법원행정처 *복지후생담당관실	5~7	- 연수관, 교육관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위 각 업무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위 각 업무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안전·보건전담 조직		법원행정처 *복지후생담당관실	5~7	- 예산·국유재산 관리 등 재무, 시설 관련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안전보건 업무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재산등록		대법원 *윤리감사제1의관실	5	- 재산등록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재산등록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재산등록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업무분야	관할 법원 (부서명)	직급	직무수행요건
정보공개담당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	6~7	- 정보공개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정보공개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국제사법공조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	6~7	- 국제사법공조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국제사법공조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국제사법공조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법원청사 구성담당	법원행정처 *기술담당관실	5~7	- 법원청사 신·증축 업무수행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법원청사 조성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법원청사 조성에 대한 이해와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청사운영·시설관리	법원행정처 *정보시스템운영과	6~7	- 청사운영 또는 시설관리 업무수행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청사운영 또는 시설관리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공탁금 관리위원회	법원행정처 *공탁법인심의담당실	5	- 금융기관업무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있는 사람 - 타부처 및 실·국(과)와의 업무협조 및 조정 등의 능력이 있는 사람

##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행정예규 제1464호 2026. 5. 7. 결재)

법원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1의4, 별표 1의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예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별표 1]

## 징계양정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 고 중과실이거나, 비 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 고 경과실이거나, 비 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 - 각종 규정 미준수 - 지연처리 - 확인소홀 - 관리·감독 책임소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불이익처분
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비위(하목에 따른 비위는 제외한다)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다. 공문서 위·변조, 파기·망실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라. 허위문서·조사표 작성, 허위보고, 허위전산입력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마. 비밀·대외비 문서관리 소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바. 문서, 기록, 관인관리 소홀		강등~정직	감봉	견책	불이익처분
사. 시험부정행위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아. 근무평정 관련 부정행위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자. 감사업무방해 행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불이익처분
차. 예산·회계 관련 비위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카. 물품 및 시설관리 태만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불이익처분
타. 감정인 선정관련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불이익처분
파.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고 발 의무 불이행		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 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 은 경우		별표 1의2와 같음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 고 중과실이거나, 비 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 고 경과실이거나, 비 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인 경우
거.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 한 부당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신고		감봉	견책	불이익처분	
더.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불이익처분
3. 직장이탈 금지의무 위반		* 월 3일(회) : 최초 무단결근 등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의 일(회)수를 산정			
가. 무단결근		해임~견책 (월 3일 초과)			불이익처분 (월 3일 이하)
나. 지참·무단이석		강등~견책 (월 3회 초과)			불이익처분 (월 3회 이하)
다. 당직근무 불이행		강등~정직	감봉	견책	불이익처분
4. 친절·공정의무 위반					
가. 불친절에 의한 물의 야기		감봉	견책	불이익처분	
나. 불공정에 의한 물의 야기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불이익처분
5. 비밀엄수의무 위반					
가. 직무 관련 비밀의 누설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행동강령신고 내용 누설		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다.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6. 청렴의무 위반					
가. 금품·향응 수수 또는 요구		별표 1의3과 같음			
나. 금품·향응 수수 관련 관리감독 소홀		강등~감봉		견책~불이익처분	
7. 품위유지의무 위반					
가. 성 관련 비위		별표 1의4와 같음			
나.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 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 는 등의 부당행위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 고 중과실이거나, 비 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 고 경과실이거나, 비 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인 경우
다. 음주·무면허운전	별표 1의5와 같음				
라. 마약류 관련 비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마. 스토킹범죄	파면	파면~해임	강등~감봉	감봉	
바.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집단행위포함) 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10. 행동강령의 위반					
가.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강등~정직	감봉	견책	불이익처분	
나. 특혜의 배제 위반	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강등~정직	감봉	견책	불이익처분	
라. 인사청탁 및 인사개입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불이익처분	
마. 이권개입 및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	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바. 알선청탁 금지위반	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사.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아. 경조사 통지 및 경조금품 수수제한 위 반	감봉	견책	불이익처분		
자. 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위반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불이익처분	
※ 비교					
1. 제1호파목에서 "주요 부패행위"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사유 의 시효가 5년인 비위를 말한다.					
2. 제1호거목에서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4조에 서 규정한 다음 어느 하나의 행위를 말한다.					
1)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					
2) 다른 공무원으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 법으로 취득한 공무원이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3)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은 제1호터목과 같다. 다만, 동법 제14조의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은 제1호거목과 같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 고 중과실이거나, 비 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 고 경과실이거나, 비 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인 경우
<p>4. 제7호나목에서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란 공무원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음 어느 하나의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른 공무원</li> <li>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의 직원</li> <li>3)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소속 직원을 말한다)</li> </ol> <p>5. 제7호라목에서 “마약류 관련 비위”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p> <p>6. 제7호마목에서 “스토킹범죄”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p>					

[별표 1의4]

## 성 관련 비위 징계양정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 고 중과실이거나, 비 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 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폭력범죄					
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
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다. 공연(公然)음란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 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바. 허위 영상물 등의 편집·반포 등 의 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 외의 성폭력 범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 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4. 음란물 유포		파면~해임	해임~정직	정직~감봉	감봉
※ 비교					
1. 제1호에서 “성폭력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2. 제1호나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3. 제1호라목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제1호마목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제1호바목에서 “허위 영상물 등의 편집·반포 등의 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제4호에서 “음란물 유포”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별표 1의5]

**음주·무면허운전 징계양정기준(제2조제1항 관련)**

구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유형		처리 기준
1.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 자전거등 음주운전의 경우		감봉~견책
	나. 자전거등 외음주운전의 경우	1) 혈중알콜농도 0.08% 미만	정직~감봉
		2)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0.2% 미만	강등~정직
		3)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해임~정직
다. 음주측정 거부		해임~정직	
2. 2회 (음주측정 거부 포함)			파면~강등
3. 3회 이상 (음주측정 거부 포함)			파면~해임
4.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 발생	가. 상해 또는 물적피해의 경우		해임~정직
	나. 사망사고의 경우		파면~해임
	다.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 물적피해 후 도주한 경우	해임~정직
		2) 인적피해 후 도주한 경우	파면~해임
5. 운전업무 종사자의 음주운전	가. 혈중알콜농도 0.08% 미만 (최초)		해임~강등
	나.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최초)		파면~해임
	다. 음주측정 거부		파면~해임
	라. 2회 이상의 경우		파면~해임
6. 무면허 운전	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취소 중의 운전		강등~정직
	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취소 중의 음주운전		파면~강등
	다. 단순 무면허 운전		견책~불이익처분
7. 음주운전을 은닉하거나 방조한 경우	가. 허위의 진술(음주측정을 포함)을 하여 타인의 음주운전을 은닉한 경우		강등~감봉
	나. 타인이 음주한 사실을 알면서도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		정직~감봉
<p><b>※ 비고</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li> <li>“자전거등”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등을 말한다.</li> <li>“음주측정 거부”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을 불응한 것을 말한다.</li> <li>“운전업무 종사자”란 운전직류 공무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직무수행 중 운전 또는 관용차 운전의 경우에 한하여 이 부분 양정기준을 적용한다.</li> <li>위 표 제1호(가목은 제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타인에게 허위진술(음주측정을 포함)하게 하는 등 본인의 음주 운전을 은닉하도록 교사한 경우에는 같은 표에 따른 처리 기준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li> </ol>			

## 신법령 목록 (2026. 4. 16 ~ 2026. 4. 30)

### 법 률

법률제21545호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21223	2026. 4. 21.	4
법률제21546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	"	5
법률제21547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	"	6
법률제21548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	"	7
법률제2154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	"	8
법률제21550호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	"	12
법률제21551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	"	"	13
법률제21552호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14
법률제21553호	전파법 일부개정법률	"	"	15
법률제21554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18
법률제21555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	"	19
법률제21556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22
법률제21557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26
법률제21558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27
법률제21559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40
법률제21560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	"	47
법률제21561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48
법률제21562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49

법률제21563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1223	2026. 4. 21.	50
법률제21564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51
법률제21565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52
법률제21566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53
법률제21567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56
법률제21568호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	"	"	59
법률제21569호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61
법률제21570호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	"	"	63
법률제21571호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	"	"	65
법률제21572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	"	69
법률제21573호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	"	70
법률제21574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	"	74
법률제21575호	통계법 일부개정법률	"	"	75
법률제2157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21224 (별관2)	"	2
법률제21577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	"	4
법률제21578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	"	59
법률제21579호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21228	2026. 4. 28.	5
법률제21580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	"	6
법률제21581호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	"	"	9
법률제21582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	"	"	10
법률제21583호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11
법률제21584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	"	12
법률제21585호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14

법률제21586호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	21228	2026. 4. 28.	22
법률제21587호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	"	23
법률제21588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	"	"	27
법률제21589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29
법률제21590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31
법률제21591호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	"	32
법률제21592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	33
법률제21593호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	"	"	35
법률제21594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37
법률제21595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	"	38
법률제21596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43
법률제21597호	한복문화산업 진흥법	"	"	44
법률제21598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	"	49
법률제21599호	환자기본법	"	"	50
법률제21600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	62
법률제21601호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	"	64
법률제21602호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	66
법률제21603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	"	69
법률제21604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	"	73
법률제21605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	"	"	74
법률제21609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21229 (별권1)	2026. 4. 29.	2
법률제21606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21230	2026. 4. 30.	5
법률제21607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	"	6

## 조 약

조약제2624호	대한민국 정부와 몰도바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21222	2026. 4. 20.	3
조약제2625호	대한민국 정부와 아이슬란드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21227	2026. 4. 27.	4
조약제2626호	대한민국 정부와 조지아 정부 간의 기후변화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21228	2026. 4. 28.	75
조약제2627호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1/4)	21228 (별권1)	"	2
조약제2627호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2/4)	21228 (별권2)	"	2
조약제2627호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3/4)	21228 (별권3)	"	2
조약제2627호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4/4)	21228 (별권4)	"	2
조약제2628호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한	21228	"	88
조약제2629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원산지 규정)의 부록 2 품목별 원산지 기준 변경을 승인하기 위한 결정	21229	2026. 4. 29.	4

## 대통령령

대통령령제36264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1220	2026. 4. 16.	4
대통령령제36265호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	21223	2026. 4. 21.	76
대통령령제36266호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86
대통령령제36267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8
대통령령제36268호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	109
대통령령제36269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21
대통령령제36270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22
대통령령제36271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26
대통령령제36272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27
대통령령제36273호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29
대통령령제36274호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31
대통령령제36275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32
대통령령제36276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1225	2026. 4. 23.	4
대통령령제36277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
대통령령제36278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
대통령령제36279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1228	2026. 4. 28.	97
대통령령제36280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0
대통령령제36281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1
대통령령제36282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23
대통령령제36283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45

대통령령제36284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1228	2026. 4. 28.	147
대통령령제36285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48
대통령령제36286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58
대통령령제36287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59
대통령령제3628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61
대통령령제36289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1230	2026. 4. 30.	7
대통령령제36290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	8

## 총리령

총리령제2111호	지식재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정령	21221	2026. 4. 17.	4
-----------	------------------------------------	-------	--------------	---

부 령

국토교통부령제1579호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220	2026. 4. 16.	6
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34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2
농림축산식품부령제763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221	2026. 4. 17.	17
재정경제부령제28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	21222	2026. 4. 20.	11
해양수산부령제793호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2
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35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223	2026. 4. 21.	135
농림축산식품부령제765호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37
문화체육관광부령제630호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	"	"	138
성평등가족부령제9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55
행정안전부령제618호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	"	18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168호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규칙 제정령	21224	2026. 4. 22.	3
농림축산식품부령제764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
해양수산부령제794호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5
농림축산식품부령제766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225	2026. 4. 23.	8
보건복지부령제1172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23
해양수산부령제795호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31
해양수산부령제796호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226	2026. 4. 24.	4

행정안전부령제620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226	2026. 4. 24.	5
국토교통부령제1580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21228	2026. 4. 28.	163
행정안전부령제621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69
국방부령제1210호	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	21229	2026. 4. 29.	134
고용노동부령제465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1230	2026. 4. 30.	9
기후에너지환경부령제3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2
재정경제부령제29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13

## 인사

■ 인사발령 법 제75호 | 2026. 4. 1.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b>1. 교육명령</b>			
<b>가. 고등법원 부장판사</b>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규홍	2026. 4. 2.부터 2026. 4. 3.까지 법관연수교육(2026년도 환경소송의 주요 쟁점) 피교육을 명함
<b>나. 지방법원 부장판사</b>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곽경평	2026. 4. 2.부터 2026. 4. 3.까지 법관연수교육(2026년도 환경소송의 주요 쟁점) 피교육을 명함
	"	김도요	"
	"	이재욱	"
	"	이효두	"
	"	임혜원	"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장한홍	"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강우찬	"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송승훈	"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임태혁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상구	"
	"	송병훈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김세현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신동현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윤희	"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아름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이재찬	2026. 4. 2.부터 2026. 4. 3.까지 법관연수교육(2026년도 환경소송의 주요 쟁점) 피교육을 명함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박병민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훈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박철홍	"

#### 다.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무신	2026. 4. 2.부터 2026. 4. 3.까지 법관연수교육(2026년도 환경소송의 주요 쟁점) 피교육을 명함
"	김봉원	"
"	김슬기	"
"	원종찬	"
"	위광하	"
"	임종호	"
"	최은정	"
대전고등법원 판사	이의석	"
수원고등법원 판사	서정희	"
"	이영미	"
"	정진아	"
특허법원 판사	김재령	"

#### 라. 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종욱	2026. 4. 2.부터 2026. 4. 3.까지 법관연수교육(2026년도 환경소송의 주요 쟁점) 피교육을 명함
대구고등법원 판사	조용민	"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성인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특허법원 판사	임현화	2026. 4. 2.부터 2026. 4. 3.까지 법관연수교육(2026년도 환경소송의 주요 쟁점) 피교육을 명함
<b>마. 지방법원 판사</b>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노아	2026. 4. 2.부터 2026. 4. 3.까지 법관연수교육(2026년도 환경소송의 주요 쟁점) 피교육을 명함
	"	김미영	"
	"	신미진	"
	"	오민지	"
	"	이주영	"
	"	이지현(李 知炫)	"
	"	이혜인	"
	"	최은정	"
	"	한충엽	"
	서울가정법원 판사	김해마루	"
	서울행정법원 판사	유영화	"
	"	최가영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안홍준	"
	수원지방법원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아영	"
	수원지방법원 판사	조유리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임락균	"
	대구지방법원 판사	선승혜	"
	창원지방법원 판사	제아윤	"
	광주지방법원 판사	유주원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판사	이화진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한광수	"

## ■ 인사발령 법 제76호 | 2026. 4. 2.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b>1. 교육명령</b>			
<b>가. 고등법원 부장판사</b>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백강진	2026. 4. 6.부터 2026. 4. 7.까지 법관연수교육(2026년도 젠더와 법, 그리고 법원) 피교육을 명함
<b>나. 지방법원 부장판사</b>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재욱	2026. 4. 6.부터 2026. 4. 7.까지 법관연수교육(2026년도 젠더와 법, 그리고 법원) 피교육을 명함
	"	정용신	"
	"	한속희	"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수정	"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강우찬	"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김윤선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이정현	"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김정아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유진	"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수영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부장판사	진민희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신동헌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장	현의선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정승연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주영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장래아	2026. 4. 6.부터 2026. 4. 7.까지 법관연수교육(2026년도 젠더와 법, 그리고 법원) 피교육을 명함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장	채정선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부장판사	오승이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김동희	"
	"	김은경	"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연진	"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민주	"
	"	김은엽	"
	"	윤 민	"
	"	이주연	"
	"	이혜린	"
	"	한나라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정현기	"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방선옥	"
	"	전성준	"
<b>다.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b>			
	서울고등법원 판사	송혜정	2026. 4. 6.부터 2026. 4. 7.까지 법관연수교육(2026년도 젠더와 법, 그리고 법원) 피교육을 명함
	"	유동균	"
	"	최다은	"
	광주고등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경선	"
	수원고등법원 판사	정진아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특허법원 판사	김재령	2026. 4. 6.부터 2026. 4. 7.까지 법관연수교육(2026년도 젠더와 법, 그리고 법원) 피교육을 명함
<b>라. 사법연수원 교수</b>			
	사법연수원 교수	김은솔	2026. 4. 6.부터 2026. 4. 7.까지 법관연수교육(2026년도 젠더와 법, 그리고 법원) 피교육을 명함
	"	이서윤	"
<b>마. 재판연구관</b>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아람	2026. 4. 6.부터 2026. 4. 7.까지 법관연수교육(2026년도 젠더와 법, 그리고 법원) 피교육을 명함
	"	김이슬	"
<b>바. 고등법원 판사</b>			
	부산고등법원 판사	박정미	2026. 4. 6.부터 2026. 4. 7.까지 법관연수교육(2026년도 젠더와 법, 그리고 법원) 피교육을 명함
<b>사. 지방법원 판사</b>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강혜윤	2026. 4. 6.부터 2026. 4. 7.까지 법관연수교육(2026년도 젠더와 법, 그리고 법원) 피교육을 명함
	"	김정윤	"
	"	오민지	"
	"	이원석	"
	서울행정법원 판사	신세아	"
	"	유영화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문지용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안홍준	2026. 4. 6.부터 2026. 4. 7.까지 법관연수교육(2026년도 젠더와 법, 그리고 법원) 피교육을 명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강제인	"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동균	"
	수원지방법원 판사	유현주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박광일	"
	부산가정법원 판사	이현지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박재인	"
	창원지방법원 판사	김진경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김현정	"
	"	정초롱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김민수	"

■ 인사발령 법 제77호 | 2026. 4. 6.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b>1. 교육명령</b>			
<b>가. 고등법원장</b>			
	수원고등법원장	배준현	2026. 4. 9.부터 2026. 4. 10.까지 법관연수교육(2026년도 IT와 법, 그리고 법원) 피교육을 명함
<b>나. 지방법원장</b>			
	대전회생법원장	성보기	2026. 4. 9.부터 2026. 4. 10.까지 법관연수교육(2026년도 IT와 법, 그리고 법원) 피교육을 명함
<b>다. 고등법원 부장판사</b>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백강진	2026. 4. 9.부터 2026. 4. 10.까지 법관연수교육(2026년도 IT와 법, 그리고 법원) 피교육을 명함
<b>라. 지방법원 부장판사</b>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고승일	2026. 4. 9.부터 2026. 4. 10.까지 법관연수교육(2026년도 IT와 법, 그리고 법원) 피교육을 명함
	"	김용희	"
	"	박정우	"
	"	예지희	"
	"	이종록	"
	"	한속희	"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강우찬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공현진	"
	"	진현섭	"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김성수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성수	2026. 4. 9.부터 2026. 4. 10.까지 법관연수교육(2026년도 IT와 법, 그리고 법원) 피교육을 명함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지현	"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문경훈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장	강부영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허정훈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부장판사	김희영	"
	"	전경훈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송현경	"
	"	신지은	"
	"	이창섭	"
	"	진원두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영하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상구	"
	"	송병훈	"
	"	양상익	"
	"	이정권	"
	수원회생법원 부장판사	노연주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김주관	"
	"	이탁순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부장판사	박상준	"
	"	이성은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배구민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신동현	2026. 4. 9.부터 2026. 4. 10.까지 법관연수교육(2026년도 IT와 법, 그리고 법원) 피교육을 명함
	"	오현석	"
	"	조정현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강세빈	"
	"	장윤미	"
	"	정승연	"
	"	최복규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홍은아	"
	대전회생법원 부장판사	나경선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부장판사	황성욱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김선숙	"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장	손주희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권보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장	채정선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정승혜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소민	"
	"	임성철	"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김경희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노행남	"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박동규	"
	"	정재우	"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희경	"
	"	정현희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	김남일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이지웅	2026. 4. 9.부터 2026. 4. 10.까지 법관연수교육(2026년도 IT와 법, 그리고 법원) 피교육을 명함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강애란	"
	"	김종석	"
	"	남해인	"
	광주가정법원 부장판사	최미영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조재헌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박철홍	"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정현우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장판사	지충현	"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상훈	"
	"	방선옥	"

**마.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영주	2026. 4. 9.부터 2026. 4. 10.까지 법관연수교육(2026년도 IT와 법, 그리고 법원) 피교육을 명함
	"	박원철	"
	"	유동균	"
	"	이지영	"
	서울고등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도식	"
	서울고등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은혜	"
	광주고등법원 판사	이호산	"
	수원고등법원 판사	강선아	"
	"	이태웅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특허법원 판사	김재령	2026. 4. 9.부터 2026. 4. 10.까지 법관연수교육(2026년도 IT와 법, 그리고 법원) 피교육을 명함
	"	안지열	"
<b>바. 재판연구관</b>			
	대법원 재판연구관	강동훈	2026. 4. 9.부터 2026. 4. 10.까지 법관연수교육(2026년도 IT와 법, 그리고 법원) 피교육을 명함
	"	편병호	"
<b>사. 고등법원 판사</b>			
	대구고등법원 판사	권지은	2026. 4. 9.부터 2026. 4. 10.까지 법관연수교육(2026년도 IT와 법, 그리고 법원) 피교육을 명함
<b>아. 지방법원 판사</b>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태현	2026. 4. 9.부터 2026. 4. 10.까지 법관연수교육(2026년도 IT와 법, 그리고 법원) 피교육을 명함
	"	김혜령	"
	"	양우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이혜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장호준	"
	서울가정법원 판사	김범준	"
	"	김해마루	"
	"	오한승	"
	"	임한아	"
	서울행정법원 판사	이지은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동현	2026. 4. 9.부터 2026. 4. 10.까지 법관연수교육(2026년도 IT와 법, 그리고 법원) 피교육을 명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김은집	"
	"	김현주	"
	"	조상은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박보미	"
	"	안홍준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김진성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보현	"
	"	최보윤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사	정지원	"
	인천지방법원 판사	이상언	"
	수원회생법원 판사	이원식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박광일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장혜선	"
	청주지방법원 판사	조진용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강화현	"
	"	류의준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판사	최자윤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판사	문 혁	"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서현	"
	부산회생법원 판사	김성준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박주영	"
	창원지방법원 판사	김태훈	"
	"	홍대훈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김도형	2026. 4. 9.부터 2026. 4. 10.까지 법관연수교육(2026년도 IT와 법, 그리고 법원) 피교육을 명함
	광주지방법원 판사	이지혜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권예슬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한광수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김민수	"
	"	원도연	"

■ 인사발령 법 제78호 | 2026. 4. 9.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b>1. 교육명령</b>			
<b>가. 지방법원 부장판사</b>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조영호	2026년도 함께 떠나는 역사 여행 I (우리 역사의 숨결을 찾아서) (2026. 4. 13.) 피교육을 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영은	"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민수	"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장용범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부장판사	노현미	"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강문희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국현	"
	"	김종근	"
	"	박주연	"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수영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정의정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부장판사	안재훈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하선화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영숙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장수진	"
<b>나.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b>			
	서울고등법원 판사	강경표	2026년도 함께 떠나는 역사 여행 I (우리 역사의 숨결을 찾아서) (2026. 4. 13.) 피교육을 명함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서울고등법원 판사	강성훈	2026년도 함께 떠나는 역사 여행 I (우리 역사의 숨결을 찾아서) (2026. 4. 13.) 피교육을 명함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대권	"
<b>다. 재판연구관</b>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이슬	2026년도 함께 떠나는 역사 여행 I (우리 역사의 숨결을 찾아서) (2026. 4. 13.) 피교육을 명함
<b>라. 지방법원 판사</b>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정윤	2026년도 함께 떠나는 역사 여행 I (우리 역사의 숨결을 찾아서) (2026. 4. 13.) 피교육을 명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박근규	"
	수원가정법원 판사	허 민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강화현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판사	이은경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성재준	"

■ 인사발령 법 제79호 | 2026. 4. 13.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b>1. 교육명령</b>			
<b>가. 지방법원 부장판사</b>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진혜	2026. 4. 16.부터 2026. 4. 17.까지 법관연수교육(2026년도 장애와 법, 그리고 법원) 피교육을 명함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이민영	"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강우찬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신유	"
	"	신순영	"
	"	윤혜정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박지영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이혜림	"
	"	장윤미	"
	"	진영현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박은주	"
	"	신정민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	김지나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동현	"
	"	주성화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권경선	"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권형관	"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한나라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박병민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한혜윤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b>나.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b>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의영	2026. 4. 16.부터 2026. 4. 17.까지 법관연수교육(2026년도 장애와 법, 그리고 법원) 피교육을 명함
	특허법원 판사	김재령	"
	"	이지영	"
<b>다. 재판연구관</b>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이슬	2026. 4. 16.부터 2026. 4. 17.까지 법관연수교육(2026년도 장애와 법, 그리고 법원) 피교육을 명함
<b>라. 고등법원 판사</b>			
	부산고등법원 판사	임효빈	2026. 4. 16.부터 2026. 4. 17.까지 법관연수교육(2026년도 장애와 법, 그리고 법원) 피교육을 명함
<b>마. 지방법원 판사</b>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선임	2026. 4. 16.부터 2026. 4. 17.까지 법관연수교육(2026년도 장애와 법, 그리고 법원) 피교육을 명함
	"	안민주	"
	"	이예지	"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영완	"
	"	김종완	"
	"	박은지	"
	"	신연석	"
	"	신옥영	"
	"	이주일	"
	"	최가영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안홍준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권혁재	2026. 4. 16.부터 2026. 4. 17.까지 법관연수교육(2026년도 장애와 법, 그리고 법원) 피교육을 명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강제인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보현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이디모데	"
	인천지방법원 판사	홍순건	"
	수원지방법원 판사	한지숙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정주희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김찬미	"
	대구지방법원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동현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강화현	"
	부산회생법원 판사	김재원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강보라	"

■ 인사발령 법 제80호 | 2026. 4. 17.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휴 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천지원 김미진	법원조직법 제51조 및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2026. 4. 20.부터 2027. 2. 19.까지 휴직을 명함

■ 인사발령 법 제81호 | 2026. 4. 20.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지정해제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지예	근무시간 단축근무 해제를 명함 (2026. 4. 30. 자)

■ 인사발령 법 제82호 | 2026. 4. 20.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b>1. 사법연구</b>			
<b>가. 고등법원 부장판사</b>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규홍	2026. 5. 11.부터 2026. 6. 7.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b>나. 지방법원 부장판사</b>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류연중	2026. 5. 7.부터 2026. 6. 3.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	최석문	2026. 5. 11.부터 2026. 6. 10.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안복열	2026. 5. 26.부터 2026. 6. 22.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주석	2026. 5. 18.부터 2026. 6. 12.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한정석	2026. 5. 11.부터 2026. 6. 5.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문혜정	2026. 5. 26.부터 2026. 6. 25.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	박이규	2026. 5. 1.부터 2026. 5. 31.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	함종식	2026. 5. 6.부터 2026. 6. 5.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강길연	2026. 5. 18.부터 2026. 6. 14.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b>다.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b>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원석	2026. 5. 25.부터 2026. 6. 21.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 인사발령 법 제83호 | 2026. 4. 20.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b>1. 교육명</b>			
<b>가. 지방법원장</b>			
	청주지방법원장	조미연	2026. 4. 23.부터 2026. 4. 24.까지 법관연수교육(2026년도 언론과 법, 그리고 법원) 피교육을 명함
<b>나. 고등법원 부장판사</b>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백강진	2026. 4. 23.부터 2026. 4. 24.까지 법관연수교육(2026년도 언론과 법, 그리고 법원) 피교육을 명함
	"	이규홍	"
	"	황진구	"
<b>다. 지방법원 부장판사</b>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곽경평	2026. 4. 23.부터 2026. 4. 24.까지 법관연수교육(2026년도 언론과 법, 그리고 법원) 피교육을 명함
	"	남인수	"
	"	박정우	"
	"	이정재	"
	"	이종록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창열	"
	"	장창국	"
	"	최희정	"
	"	한속희	"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이영남	"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지혜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이탁순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배구민	2026. 4. 23.부터 2026. 4. 24.까지 법관연수교육(2026년도 언론과 법, 그리고 법원) 피교육을 명함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조정현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장	현의선	"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박기쁨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장	오명희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권보원	"
	"	정덕기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동현	"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권미연	"
	"	정현희	"
<b>라.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b>			
	서울고등법원 판사	강효원	2026. 4. 23.부터 2026. 4. 24.까지 법관연수교육(2026년도 언론과 법, 그리고 법원) 피교육을 명함
	수원고등법원 판사	서정희	"
	특허법원 판사	김기수	"
	"	김재령	"
	"	이지영	"
<b>마. 사법연수원 교수</b>			
	사법연수원 교수	현영주	2026. 4. 23.부터 2026. 4. 24.까지 법관연수교육(2026년도 언론과 법, 그리고 법원) 피교육을 명함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b>바. 지방법원 판사</b>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노아	2026. 4. 23.부터 2026. 4. 24.까지 법관연수교육(2026년도 언론과 법, 그리고 법원) 피교육을 명함
	"	송승환	"
	"	이지현(李 知炫)	"
	"	한충엽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조상은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안홍준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고희정	"
	인천지방법원 판사	성혜진	"
	"	전선주	"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황방모	"
	대구지방법원 판사	선승혜	"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판사	김재승	"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서현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고은솔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한광수	"

■ 인사발령 법 제84호 | 2026. 4. 20.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b>1. 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b>			
<b>가. 지방법원 부장판사</b>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성인혜	법원조직법 제51조 및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2026. 5. 6.부터 2026. 10. 23.까지 휴직을 명함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이광영	2026. 5. 7.부터 2027. 5. 6.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b>나. 지방법원 판사</b>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지현 (李知珪)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6. 5. 11.부터 2027. 2. 10.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신은정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6. 5. 7.부터 2026. 6. 5.까지 휴직을 명함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김효정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6. 5. 20.부터 2027. 2. 4.까지 휴직을 명함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김수민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6. 5. 20.부터 2027. 2. 19.까지 휴직을 명함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정지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6. 5. 20.부터 2026. 8. 19.까지 휴직을 명함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정수호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6. 5. 28.부터 2026. 8. 21.까지 휴직을 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명희	2026. 5. 23.부터 2026. 6. 26.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수원지방법원 판사	정 혁	2026. 5. 2.부터 2026. 6. 28.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광주지방법원 판사	김아란	2026. 5. 3.부터 2026. 7. 2.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 2. 복 직

###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최규연	복직을 명함. 15호봉을 급함.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에 포함 (2026. 5. 23. 자)
---------------	-----	---

### 나. 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박지원 (朴志原)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인천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6. 5. 18. 자)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6. 5. 18.부터 2026. 7. 16.까지 휴직을 명함
춘천지방법원 판사	이보라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춘천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6. 5. 1. 자)
광주지방법원 판사	장유나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광주지방법원 판사에 포함 (2026. 5. 1. 자)

■ 인사발령 법 제85호 | 2026. 4. 21.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1. 사법연구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인택	2026. 4. 22.부터 2026. 10. 21.까지 사법연구를 명함

■ 인사발령 법 제86호 | 2026. 4. 21.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b>1. 교육명령</b>			
<b>가. 지방법원 부장판사</b>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조영호	2026년도 조정담당법관 간담회 (2026. 4. 27.) 피교육을 명함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강민호	"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동호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소연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장	성하경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장판사	정치훈	"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선범	"
<b>나.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b>			
	수원고등법원 판사	류희상	2026년도 조정담당법관 간담회 (2026. 4. 27.) 피교육을 명함
<b>다. 고등법원 판사</b>			
	특허법원 판사	윤정운	2026년도 조정담당법관 간담회 (2026. 4. 27.) 피교육을 명함
<b>라. 지방법원 판사</b>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동원	2026년도 조정담당법관 간담회 (2026. 4. 27.) 피교육을 명함

■ 인사발령 법 제87호 | 2026. 4. 23.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b>1. 정기승급</b>			
<b>가. 지방법원 부장판사</b>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범준	17호봉을 급함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양지정	16호봉을 급함
	"	하현우	"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이민영	15호봉을 급함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김성수	"
	"	홍준서	"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장	오명희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장병준	"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아람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유성혜	14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부장판사	안재훈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제승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오현석	13호봉을 급함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조희성	"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박강민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	구성진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백경현	12호봉을 급함
	"	정연희	11호봉을 급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	유희선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현정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장판사	지충현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b>나.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b>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영현	15호봉을 급함
	"	김희수	"
<b>다. 사법연수원 교수</b>			
	사법연수원 교수	현영주	9호봉을 급함
<b>라. 고등법원 판사</b>			
	대전고등법원 판사	김현영	9호봉을 급함
	부산고등법원 판사	박정미	"
	광주고등법원 판사	변이섭	"
	"	이용석	"
	특허법원 판사	윤정운	"
	광주고등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김진호	8호봉을 급함
	수원고등법원 판사	황창민	"
	광주고등법원 판사 (제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정우택	7호봉을 급함
<b>마. 지방법원 판사</b>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연준	10호봉을 급함
	"	황지영	"
	서울가정법원 판사	김범준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화연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이윤규	"
	울산지방법원 판사	최희동	"
	창원지방법원 판사	이병호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유성	9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오에스더	"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승민	"
	"	이혜선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윤소희	"
	인천지방법원 판사	위은숙	"
	수원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이지희	"
	수원가정법원 판사	김새미	"
	"	김언지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강영희	"
	대구지방법원 판사	강현재	"
	대구지방법원 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동현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	박승균	"
	전주지방법원 판사	박성수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의기	8호봉을 급함
	청주지방법원 판사	조희정	"
	부산지방법원 판사	신은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주원	7호봉을 급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최지은	"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해솔	"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이효선	"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라미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유영상	6호봉을 급함
	"	이순공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영완	6호봉을 급함
	"	방민우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김나정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이상률	"
	수원지방법원 판사	소민욱	"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김태훈	"
	대전지방법원 판사	서성기	"
	청주지방법원 판사	이지은	"
	"	정태식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이희수	"
	울산지방법원 판사	전정우	"
	전주지방법원 판사	남윤표	"
	"	임종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혜영 (朴惠永)	5호봉을 급함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한영동	"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도영	4호봉을 급함

(2026. 5. 1. 자)

■ 인사발령 법 제88호 | 2026. 4. 30.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b>1. 교육명령</b>			
<b>가. 지방법원 부장판사</b>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박강균	2026. 5. 7.부터 2026. 5. 8.까지 법관연수교육(2026년도 감성과 명상의 연수) 피교육을 명함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지연	"
	"	김지영	"
	"	노태헌	"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효진	"
	"	손승온	"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수정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손원락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희진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강태호	"
	"	오승준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권경선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주영	"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정희영	"
<b>나.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b>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선희	2026. 5. 7.부터 2026. 5. 8.까지 법관연수교육(2026년도 감성과 명상의 연수) 피교육을 명함
	"	홍성욱	"
	대전고등법원 판사	이진영	"
	특허법원 판사	김재령	"

항	소속 및 지위	성명	인사명령
<b>다. 고등법원 판사</b>			
	수원고등법원 판사	차선영	2026. 5. 7.부터 2026. 5. 8.까지 법관연수교육(2026년도 감성과 명상의 연수) 피교육을 명함
<b>라. 지방법원 판사</b>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노아	2026. 5. 7.부터 2026. 5. 8.까지 법관연수교육(2026년도 감성과 명상의 연수) 피교육을 명함
	"	지은희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남민영	"

## 공고

## 관인의 폐기 공고

2024. 4. 1. 수원지방법원 등기국 개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리규칙 제39조 및 제40조, 동 시행내규 제56조에 의거하여 2026. 5. 6. 폐기한 수원지방법원 광역등기국 청사준비위원회 관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6일

수원지방법원장



관 인 명		수원지방법원 광역등기국 청사준비위원회인			
종 류	<input type="checkbox"/> 청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직인 <input type="checkbox"/> 특수관인	관리부서	수원지방법원총무과		
폐 기 관 인	(인 영)	등 록 일 (재 등 록 일)	2021년 2월	10일	
		최 초 사 용 일	2021년 2월	10일	
		폐 기 사 유	법원사무관리규칙 제39조 제2항 -2024. 4. 1. 수원지방법원 등기국 개청으로 인한 폐기		
		비 고			



2026. 5. 15. 제1736호  
Supreme Court of Korea

